

---

# 병원약학 연구 지원규정

제정 2014. 09. 20.

개정 2018. 12.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병원약학 교육연구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하여 병원약학 관련 학술연구 활동 장려를 위한 병원약학 연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논문)** ① 병원약학 연구논문(이하 “연구논문”이라 한다) 선정은 공모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병원약학 분야 연구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논문 주제 및 지원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연구논문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내용이나 연구논문 지원 조건에 따라 연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연구논문 공모 및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연구비 신청자격)** ①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은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이하 “사단”이라 한다) 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의·약학관련 기관 근무자도 공동연구원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연구논문 연구기간 중 연구책임자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출장을 계획하고 있거나, 3개월 이상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③ 동일인이 2개 이상 연구논문 연구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제4조(추천 구비서류)** 책임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지원 신청서 1통
2. 이력서 1통
3. 사진(명함판) 1매
4. 연구계획서(소정양식) - 원본 1부, 사본 2부
5. 연구업적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5조(연구비 지급)** ① 연구비는 연구논문 1건당 500만원을 기본으로 하며, 연구의 내용에 따라 증액할 수 있다.

② 연구비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18.12.18)

**제6조(연구계획 변경 및 보고)** 책임연구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기간, 연구내용

---

또는 제목, 연구진, 실행예산 등 연구계획을 중대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정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연구논문 중간보고)** 법인은 연구기간 중 연구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책임연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연구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최종보고서 제출 및 발표, 게재)** ① 책임연구원은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법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 연구결과를 사단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의 병원약사회지 논문게재여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논문게재가 결정되었을 경우 책임연구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았음을 밝힌 논문을 사단 병원약사회지에 투고하여야 한다.

④ 한국계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연구비 기부를 받은 논문의 경우 책임연구원은 사단 추계학술대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았음을 밝힌 논문을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 SCI)(SCI(E))급 학술지에 투고하여야 한다. (신설 18.12.18)

**제9조(연구비 지급의 중단 및 회수)** 책임연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추후 3년간 연구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1. 연구 수행에 있어서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중간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3. 최종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4. 연구지원 신청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5.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종 연구 결과를 사단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지 않았거나 사단 병원약사회지에 게재하지 않았을 경우
6. 책임연구원이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연구 중단을 요청하였을 경우

**제10조(규정의 사항)** 연구비 지원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부 칙 (2014. 09. 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집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2017. 08. 28)**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집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 12. 18)**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집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